

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3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주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재해예방과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,
- 나. 산업재해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고,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(정부의 책무)
-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(목적), 제11조(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비정규직과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재해예방과 재할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

※ 서울시 소재 전체 사업장 대비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비율 : 81.8%('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, 고용노동부)

- 산업재해 사례 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고,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
- 센터를 2018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업무상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, 시설설비 재구성 방안 지도·조언
-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
- 산업재해 보상서비스 실무와 재할훈련 지원
- 재해사례 분석과 통계·분석기법 연구,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4층 (종로구 청계천로 105)
- 시설규모 : 약 195.45㎡
- 개소시점 : 2018년 하반기

〈참고사항 :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요〉

- 시설 규모 : 토지 553.1 m^2 , 건물 연면적 2,062.25 m^2 , 지상6층(지하 없음)
- 층별 용도
 - 1층 : 이동노동자쉼터, 주차장, 기계실 등
 - 2층 : 전태일 기념관, 노동운동사 전시관
 - 3층 : 교육장, 시민편의 공간
 - 4층 : 노동자건강증진센터, 노동 스페이스
 - 5층/6층 : 노동권익센터,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센터
- 공사기간(리모델링) : 2017.11.~ 2018.하반기
- 위치도 및 조감도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개소일로부터 3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00,000천원('18년 예산 편성 중)
- 산출근거 : 고용노동부 유사시설(근로자건강센터) 검토

항목	세부항목	산출내역	금액 (단위 : 천원)
			총계 : 500,000
인건비 (349,34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수(필수인력 7명) : 320,400 - 직업환경 의학 전문의(1명) 10,000×12月 - 간호사(2명) 5,600×12月 - 직업환경전문가(1명) 2,800×12月 - 심리상담전문가(1명) 2,800×12月 - 재활훈련전문가(1명) 2,800×12月 - 조사통계전문가(1명) 2,700×12月 · 보험료(4대 보험) 및 퇴직연금 : 28,944 ※ 349,344(보수) × 0.09 		349,344
	관리 운영비 (88,956)	일반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사무용품 : 10,996 · 기타수용비 : 3,000 · 인쇄·홍보물 제작비 : 21,000 ·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이용료 : 5,000
피복비		· 직원 상시착용 피복(8벌) : 1,200	1,200
임차료		· 임차료(12개월) : 4,000	4,000
공공요금 및 제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편물 발송대 : 1,100 · 전화 회선사용료 : 1,200 · 전기료,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: 6,100 · 기타 제세금(자동차세, 보증보험 등) : 8,500 	16,900
차량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 리스비용 : 4,800 (400 × 12月) · 자동차 주유비 : 960 (80 × 12月) 	5,760
교육훈련비		· 교육훈련비 : 1,600 (200 × 8명)	1,600
국내여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무수행관련 출장 : 7,500 ※ 월 5회 이상 :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, 작업관리 등 	7,500
사업추진비		· 회의비 : 2,500	10,000
관서업무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추진행사 : 2,500 · 개소식 : 5,000 	
복리후생비		· 특근매식비 : 2,000	2,000
사업비 (61,700)	재해예방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료물품비 : 7,000 · 검사킷 : 15,000 	22,000
	재활훈련사업	· 재활훈련 기구 구입비용 : 21,000	21,000
	산업재해 실태조사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사·통계 전문프로그램 구입 : 600 · 산업재해 실태조사 연구비 : 10,000 	10,600
	지역사회 연계	·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: 8,100	8,100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조직담당관, 2017.9.2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(정부의 책무)

제4조(정부의 책무)

-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
 2.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 7. 안전·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
 8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
 10.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

-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제1조(목적), 제11조(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)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(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)

-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경과

-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·운영 계획 수립

(보건의료정책과 2017. 9. 7.)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김 명 준(☎ 2133-7520)